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84호 2020. 8. 20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8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-----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 684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 -282호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

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19일

사 천 시 장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

저수지명	위 치	제 원			관리자	지정사유	비고
		총저수량 (천㎥)	길이 (m)	높이 (m)			
신복하저수지	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221번지 일원	20.3	114	8	사천시장	D급 (정밀 안전 진단)	
노천저수지	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1101번지 일원	27.0	100	12			
구룡저수지	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606-32번지 일원	8.08	50	12			

2.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: 경상남도 사천시(건설과)

3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

○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

※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령 별표8

- 제체 및 여수토방수로, 복통 등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 안전도 저하, 홍수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비·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

사 천 시 공 보

제684호

4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※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.

5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: 2020. 8. 19.

6. 문의처 : 사천시청 건설과(055-831-3278)